

제 21 장 최종 조항

제21.1조 부속서, 부록 및 주석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2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합의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간 합의되고,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3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통지의 교환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21.4조 양자투자협정의 종료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 1996년 9월 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상호투자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 및 이 양자투자협정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제21.5조 금융서비스에 관한 작업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지 4년 후에 회동하여 금융서비스를 이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의 실행가능성 및 편의성에 관해 논의한다.

제21.6조 유효기간과 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 존속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의 사전 서면 통지로써 이 협정을 종료한다.

제21.7조 정본

1. 이 협정의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2. 양 당사국은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시에 교환각서에 의하여 부속서 3.4 부록 1 제2절의 영어본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부가하기로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2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